|  |  |  |
| --- | --- | --- |
| **화물무역 외환수지 전자서류 심사 규범화에 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회발[2016]25호국가외환관리국의 각 성•자치구•직할시 분국•외환관리부, 선전(深圳)•다롄(大連)•칭다오(靑島)•샤먼(厦門)•닝보(寧波)시 분국, 각 중자(中資) 외환지정은행 :화물무역의 외환수지 원활화를 진일보 촉진시키고 외환지정은행(이하 '은행'으로 약칭)과 국내 기구(이하 '기업'으로 약칭)의 외환업무 처리 전자화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외환관리국은 <화물무역 외환수지 전자서류 심사지침>(이하 '지침'으로 약칭, 첨부 참조)를 제정하여 인쇄발부하오니 따라서 집행할 것을 명하는 바이며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1. 2016년 11월 1일부터 현행 화물무역 외환관리 규정과 <지침>의 요구사항에 따라 각 은행은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을 위하여 전자서류 심사의 방식으로 화물무역 외환수지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2. 국가외환관리국의 각 분국과 외환관리부는 이 통지를 접한 후 지체없이 관할구역 내의 중심지국(지국), 지방상업은행 및 외자은행에 전달하여야 한다. 각 중자(中資)은행은 이 통지를 접한 후 지체없이 산하 분지지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국가외환관리국에 반영하기 바란다.위와 같이 특별히 통지한다.첨부 : 화물무역 외환수지 전자서류 심사지침국가외환관리국2016년 9월 28일  첨부 :화물무역 외환수지 전자서류 심사지침 제1조 화물무역 외환수지 업무 원활화를 촉진시키고 외환지정은행(이하 '은행'으로 약칭)과 국내 기구(이하 '기업'으로 약칭)의 업무 처리 효율을 제고시키며 거래의 진실성, 업무의 준법성 및 리스크의 통제가능성 원칙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국가외환관리국의 화물무역 외환관리 법규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회발[2012]38호) 등 문건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지침을 제정한다.제2조 은행은 '고객을 이해하고 업무를 파악하며 심사 의무를 다하는' 업무전개 원칙과 현행 화물무역 외환관리 규정에 따라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을 위하여 화물무역 외환수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의 종이서류를 심사하거나 전자서류를 심사할 수 있다.전자서류라 함은 기업이 제출하는 현행 법률•법규의 규정에 부합되며 은행이 인정 및 접수•보관하는 전자 형식의 계약서, 영수증, 세관신고서, 운송장 등 유효한 증빙과 상업서류를 지칭하며 그 형식은 시스템상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된 전자서류, 종이서류의 스캔본 등을 포함한다.제3조 전자서류 심사 방식의 화물무역 외환수지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1)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은 최근 3년간 외화관리 규정 집행 연도평가 등급이 B(B- 제외)유형 및 그 이상인 은행이어야 한다.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이 직접적으로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 참여한 그 직상급 지점의 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2) 온전한 리스크 예방 내부통제제도를 갖추어야 한다.(3) 전자서류의 접수•저장에 필요한 기술 플랫폼 또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 기술이 전송•저장하는 서류의 온전성,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제4조 은행은 필요한 내부통제제도를 수립하여야 하고 리스크 정도에 근거하여 전자서류 심사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화물무역 외환수지 업무의 조건과 요구를 확정하여야 하며 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주적으로 신중하게 전자서류 심사 방식 적용 대상기업을 선택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진실성 및 준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제5조 전자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화물무역 외환수지 업무를 처리하는 기업은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1) 화물무역 분류 결과가 A유형이고 영업집조를 발급받은지 만 2년 이상이어야 한다.(2) 해당 업무 취급 은행에서 처리한 외환수지의 준법성 및 신용기록이 양호하여야 한다.(3) 제출하는 전자서류의 진실성, 적법성, 온전성을 보증하여야 하며 전자서류 발송•저장에 필요한 기술적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4) 은행이 리스크 통제의 차원에서 요구하는 기타 조건.제6조 전자서류 심사 방식의 화물무역 외환수지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이 준수하여야 하는 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1) 화물무역 외환관리 규정에 따라 기업이 제출하는 전자서류의 진실성과 전자서류 및 외환수지의 일치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업이 제출한 전자서류가 거래의 진실성•적법성을 증명할 수 없거나 기업이 신청한 외환수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은행은 기업에게 원시 거래서류 및 기타 관련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심사 완료 후 검사를 대비하여 심사를 거친 서류를 보관 및 비치하여야 한다. 은행이 종이서류 형식의 원시 거래서류를 심사한 경우 현행 화물무역 외환관리 규정에 따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2) 필요한 기술식별 등 수단을 취하여 기업이 제출한 전자서류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동일 전자서류 및 기타 해당 종이서류가 중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3) 거래의 진실설•적법성을 증명하는 기업의 전자서류 등 관련 정보를 온전하게 저장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4) 기업이 전자서류 심사 방식의 업무 처리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함을 발견한 경우 그를 위한 업무를 처리 시 전자서류 심사 방식을 중단하여야 한다.(5) 매년마다 기업의 원시 거래서류의 진실성 및 원시 거래서류와 해당 전자서류의 일치성에 대한 비정기 임의추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업이 제출한 전자서류의 진실성이 결여되거나 기업이 전자서류를 중복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해당 기업을 위한 업무 처리 시 전자서류 심사 방식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해당 사실을 소재지 국가외환관리국 분지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전자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화물무역 외환수지 업무를 처리하는 기업이 준수하여야 하는 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1) 은행에 제출하는 전자서류가 적법•진실•온전•명확하고 원시 거래서류와 일치하여야 하며 규정을 어기고 전자서류를 중복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2)제출한 전자서류가 거래의 진실성•적법성을 증명할 수 없거나 신청한 외환수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은행의 요구에 따라 원시 거래서류 및 기타 관련 증명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여야 한다.(3) 원시 거래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전자서류는 검사를 대비하여 5년간 저장하여야 한다. 제8조 제3조에 규정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은행은 조건 결여일로부터 다시 조건을 충족시킬 때까지 자발적으로 신규 기업을 위한 전자서류 심사 방식의 화물무역 외환수지 업무를 중단하여야 한다. 은행이 이 지침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신규 기업을 위한 전자서류 심사 방식의 화물무역 외환수지 업무를 1년간 중단하여야 한다.기업의 화물무역 분류결과가 B유형, C유형으로 하향조정된 경우 강등일로부터 제5조에 규정된 조건을 다시 충족시킬 때까지 전자서류 방식의 화물무역 외환수지를 중단하여야 한다. 제9조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 분지기구(이하 '외환관리국'으로 약칭)는 은행 및 기업의 관련 업무에 대하여 확인조사 및 검사를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은행 및 기업은 외환관리국의 감독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성실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문서, 자료 및 전자서류 데이터를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거절, 방해하거나 사실을 숨겨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은행 또는 기업이 이 지침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외환관리국이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제11조 해외스위치무역 외환수지 업무는 이 지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국적기업의 외환자금 집중적 운영관리, 자유무역시험구의 전자서류 심사 업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제12조 이 지침은 국가외환관리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  | **国家外汇管理局关于规范货物贸易外汇收支电子单证审核的通知**汇发〔2016〕25号国家外汇管理局各省、自治区、直辖市分局、外汇管理部，深圳、大连、青岛、厦门、宁波市分局；各中资外汇指定银行：为进一步促进货物贸易外汇收支便利化，满足外汇指定银行（以下简称银行）和境内机构（以下简称企业）办理外汇业务的电子化需求，国家外汇管理局制定了《货物贸易外汇收支电子单证审核指引》（以下简称《指引》，见附件），现印发你们，请遵照执行，并就有关事宜通知如下：一、自2016年11月1日起，按照现行货物贸易外汇管理规定和《指引》要求，银行为符合条件的企业办理货物贸易外汇收支时，可以审核其电子单证。二、国家外汇管理局各分局、外汇管理部接到本通知后，应及时转发辖内中心支局（支局）、地方性商业银行及外资银行。各中资银行收到本通知后，应及时转发下属分支机构。执行过程中如遇问题，请及时向国家外汇管理局反馈。特此通知。附件：货物贸易外汇收支电子单证审核指引国家外汇管理局2016年9月28日附件： 货物贸易外汇收支电子单证审核指引第一条 为促进货物贸易外汇收支业务便利化，提升外汇 指定银行（以下简称银行）和境内机构（以下简称企业）业务 办理效率，以交易真实、业务合规和风险可控为原则，根据《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国家外汇管理局关于印发货物贸易外汇管理法规有关问题的通知》（汇发[2012]38号）等文件规定，制订本指引。 第二条 银行按照“了解客户、了解业务、尽职审查”的展业原则和现行货物贸易外汇管理规定，为符合条件的企业办理货物贸易外汇收支业务时，可以审核其纸质单证，也可以审核电子单证。 电子单证是指企业提供的符合现行法律法规规定，且被银行认可并可以留存的电子形式的合同、发票、报关单、运输单据等有效凭证和商业单据，其形式包括系统自动生成的电子单证、纸质单证电子扫描件等。 第三条 银行以审核电子单证方式办理货物贸易外汇收支业务，应当具备下列条件： （一）经办银行应为近三年执行外汇管理规定年度考核B（不含B-）类及以上的银行；经办银行未直接参与考核的，应以其上一级参与考核分行的考核等级为准； （二）具有完善的风险防范内控制度； （三）具备接收、储存电子单证的技术平台或手段，且相关技术能够保证传输、储存电子单证的完整性、安全性。 第四条 银行应建立相应的内控制度，根据风险程度，确定以审核电子单证方式办理货物贸易外汇收支业务的条件和要求，在对企业充分了解的情况下，自主审慎选择进行电子单证审核的企业，以确保业务办理的真实性和合规性。 第五条 企业以提交电子单证方式办理货物贸易外汇收支业务，应当至少具备下列条件： （一）货物贸易分类结果应为A 类，且取得营业执照满2年； （二）在经办银行办理外汇收支的合规性和信用记录良好； （三）保证提交电子单证的真实、合法、完整，并具备发送、储存电子单证的技术条件； （四）银行出于风险管控要求的其他条件。 第六条 银行以审核电子单证方式办理货物贸易外汇收支业务，应当遵循的要求包括但不限于： （一）按照货物贸易外汇管理规定，对企业提交电子单证的真实性及其与外汇收支的一致性进行合理审查；企业提交的电子单证无法证明交易真实合法或与其申请办理的外汇收支不一致的，银行应要求企业提交原始交易单证及其他相关证明材料；审查完毕后，应留存审查后的单证备查；银行审核纸质原始交易单证的，应按照现行货物贸易外汇管理规定进行签注和留存； （二）应采取必要的技术识别等手段，确保企业提交电子单证的唯一性，避免同一电子单证以及与其相应的纸质单证被重复使用； （三）应完整储存证明企业交易真实、合法的电子单证等相关信息 5年备查； （四）发现企业不符合使用电子单证办理业务条件的，应在为其办理业务时停止审核电子单证； （五）每年不定期抽查企业原始交易单证的真实性及其与相应电子单证的一致性。发现企业提交的电子单证不真实或重复使用电子单证的，应自发现之日起，为其办理业务时停止审核电子单证，同时报告所在地国家外汇管理局分支机构。 第七条 企业以提交电子单证方式办理货物贸易外汇收支业务，应当遵循的要求包括但不限于： （一）向银行提交的电子单证合法、真实、完整、清晰，与原始交易单证一致，且不得违规重复使用电子单证； （二）所提交的电子单证无法证明交易真实合法或与申请办理的外汇收支不一致的，应及时按银行要求提交原始交易单证及其他相关证明材料； （三）留存原始交易单证并储存相应电子单证5年备查。 第八条 经办银行不满足第三条规定条件的，应自不满足条件之日起，自行停止为新企业以审核电子单证方式办理货物贸易外汇收支，直至重新满足条件。银行违反本指引规定受到行政处罚的，应暂停为新企业以审核电子单证方式办理货物贸易外汇收支1年。 企业货物贸易分类结果降为B、C 类的，自被降级之日起，停止以电子单证方式办理货物贸易外汇收支，直至重新满足第五条规定的条件。 第九条 国家外汇管理局及其分支机构（以下简称外汇局）将定期或不定期针对银行和企业相关业务开展核查或检查。银行和企业应积极配合外汇局的监管工作，如实说明情况，并及时提供有关文件、资料及电子单证数据，不得拒绝、阻碍和隐瞒。 第十条 银行和企业违反本指引规定的，由外汇局依据《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等相关规定予以处罚。 第十一条 离岸转手买卖外汇收支业务不适用本指引；跨国公司外汇资金集中运营管理、自由贸易试验区关于电子单证 审核业务另有规定的，从其规定。 第十二条 本指引由国家外汇管理局负责解释。　　 |